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8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최혁진 · 박정현
이용우 · 강득구 · 김현정
안호영 · 강준현 · 한민수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대법원은 청소·경비·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. 정부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단순노무용역 계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,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

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(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한다)에 대하여”를 “한다)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확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로 한다.

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청소·경비·시설물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.

③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·해지하여야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단순노무용역계약의 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입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회계원칙 등) ① (생 략)	제39조(회계원칙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공기업 · 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청소 · 경비 · 시 설물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 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 를 허용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공기업 · 준정부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 른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용 역계약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 · 해지하여야 한다.</u>
<u>② 공기업 · 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해칠 것(이하 “계약 질서위반 행위”라 한다)이 명백</u>	<u>④ ----- ----- ----- -----</u>

하다고 판단되는 자(이하 “부
정당업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2
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
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다만,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
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
부정당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
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
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
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
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
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
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
정한다.

-----한다) 및 제2항
에 따라 제출한 확약서를 정당
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
자에 대하여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-----

-----.